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84
------------	------

2025년 4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김 경 의원 등 13명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 경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교육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상의 수상 부문을 확대하고, 포상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교육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 시상 부문을 신설하고, 부문별 시상 인원을 확대함(안 제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31일 김정 의원 등 13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584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공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상의 시상 부문에 ‘교육자치협력 민간 부문’을 신설하고, 부문별 시상 인원을 4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 교육상(이하 “서울교육상”)은 197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교육상 조례」에 근거하여 같은 해부터 서울 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상 포상을 통해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교육 중요성을 재인식하거나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협력 분위기가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시상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교육상 조례」는 1994년과 1997년, 2010년과 2012년 총 4차례의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시상 부문과 인원을 조정해왔습니다.

- 구체적으로 시상부문과 인원 변화를 파악해보면, 1994년 개정 조례에서 ‘교육행정부문’ 1명이 신설되었고, 1997년 개정 조례에서 ‘유아교육 부문’ 과 ‘특수교육 부문’ 이 신설되었으며, 2010년 개정 조례에서 ‘사회교육 부문’ 이 ‘평생교육 부문’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개정 조례에서 수상 대상을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하고 공동수여도 가능하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1] 서울교육상의 시상부문 및 인원 변화¹⁾

조례명	주요 개정 내용	시상부문 및 인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서울교육상 조례 (서울시조례 제1319호, 1979.3.10. 제정·시행)	-	• 초등교육부문 2명 • 중등교육부문 2명 • 사회교육부문 1명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개정조례 (서울시조례 제3112호, 1994.8.5. 개정·시행)	• 시상부문에 “교육행정부문”, “유아교육 부문”을 신설 •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에 유관기관단체의 장을 추가	• 초등교육부문 (<u>유아교육부문 포함</u>) 2명 • 중등교육부문 2명 • 사회교육부문 1명 • <u>교육행정부문 1명</u>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개정조례 (서울시조례 제3399호, 1997.6.5. 개정·시행)	• “유아교육부문”을 “초등교육부문”에서 분리 • “특수교육부문”을 신설	• <u>유아교육부문 1명</u> • <u>특수교육부문 1명</u> • 초등교육부문 2명 • 중등교육부문 2명 • 사회교육부문 1명 • 교육행정부문 1명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개정조례 (서울시조례 제3112호, 1994.8.5. 개정·시행)	• 「사회교육법」의 「평생교육법」 개정·시행에 맞춰 “사회교육부문”을 “평생교육부문”으로 변경	• 유아교육부문 1명 • 특수교육부문 1명 • 초등교육부문 2명 • 중등교육부문 2명 • <u>평생교육부문 1명</u> • 교육행정부문 1명

1) 서울시보(<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 및 서울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www.smc.seoul.kr/info/index.do>) 검색 결과를 정리한 것임. (검색일 2025-04-18)

조례명	주요 개정 내용	시상부문 및 인원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개정조례 (서울시조례 제5251호, 2012.3.8. 개정·시행)	- 수상 요건을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확대하고, 개별수상만 가능했던 것을 공동수여가 가능하도록 수정 -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에 일반시민을 추가	위와 같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 등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교육행정 전반의 민간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상부문에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을 추가하고, 부문별 시상인원을 4명까지 증원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정 취지에 있어 별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시상 인원 증원에 대한 검토(안 제3조제1호~안 제3조제6호)

- 안 제3조의 각 호는 서울특별시교육상의 각 시상부문별 수상인원을 1~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동 조문은 기존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교육행정 부문의 수상인원 각 1명과 초등교문, 중등교육부문의 시상인원 각 2명을 모든 부문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서울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직원, 유관기관의 관계자, 보호자 등에게 더 많은 인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상 인원이 많아지면서 여러 기준과 관점에 따른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교육상의 부문별 시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시상자는 1년에 한 명도 없거나 많아도 3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 최근 5년간(2020~2024년) 서울교육상 부문별 시상자 현황²⁾

시상연도	시상부문	성명	당시 직위	구분
2020	중등교육	권○○	단장	외부(유관기관)
	평생교육	박○○	주무관	직원
	교육행정	김○○	주무관	직원
2021		시상자 없음		
2022	평생교육	김○○	교사	교원
2023	평생교육	이○○	교사	교원
2024		시상자 없음		

-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이 의결되는 경우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서울교육상 시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수상후보자 발굴과 홍보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상 부문 신설에 대한 검토(안 제3조제7호 신설)

- 한편,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7호를 신설하여 시상부문에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3항에³⁾ 근거한 교직원·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자치법규상 근거가 신설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공약 실천계획의 5대 핵심과제로 ‘소통과 협력의 학교자치 기반 조성’과 ‘서울교육 플러스 추진’을 제시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 학부모·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장려하고 있는바,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의 신설은 서울시교육청의

2)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2025.4.7.),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732번 회신 결과를 정리한 것임.

3)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적 기조와도 합치되는 개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1] 제23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 중 5대 핵심과제4)

1 학생 진단 및 맞춤형교육 강화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를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로 전환함으로써 기초학력 문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학생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4 소통과 협력의 학교자치 기반 조성  학생의 안전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은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의한 학교자치로부터 가능하므로 학교 공동체 소통구조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교자치 기반을 조성합니다.
2 심리·정서 위기학생 회복·지원  코로나19 이후 많은 학생들이 심리·정서 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위기 상황에 노출되고 있어 이러한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치유·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5 서울교육*플러스 추진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서울미래교육 발전 방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울교육*플러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3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혁신교육은 수업·평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협력교육은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합니다.	

○ 그러나 안 제3조제7호에서 “민간부문”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부분은 기존 시장부문도 일반시민 시장이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⁵⁾ 특정 부문만 일반시민의 시장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3조제7호 중 “민간부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7호와 관련하여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에서 “민간부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포상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부문과의 명칭상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교육협력 부문”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4469, 2025.4.9.).⁶⁾

4)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약 > 공약실천계획 > 공약총괄 > 5대 핵심과제,

https://seouleducation.sen.go.kr/kr/contents/annual_status/view.do (검색일 2025-04-18)

5)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상자격)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사업이나 교육 발전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정책 또는 교육시책에 부응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6)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4.9.)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서울특별시교육상은 시상부문 중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을 “교육협력부문”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7호).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84
----------	------------

제안연월일 : 2025년 4월 2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상은 모든 부문에서 일반 시민이 수상할 수 있음에도 조문 표현상 특정 부문만 수상할 수 있다고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바,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상부문 중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을 “교육협력부문”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7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7호 중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을 “교육협력부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시상부문등)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부문 1명 2. 특수교육부문 1명 3. 초등교육부문 2명 4. 중등교육부문 2명 5. 평생교육부문 1명 6. 교육행정부문 1명 <신설>	제3조(시상부문등) (현행과 같음) 1. ----- <u>4명</u> 2. ----- <u>4명</u> 3. ----- <u>4명</u> 4. ----- <u>4명</u> 5. ----- <u>4명</u> 6. ----- <u>4명</u> 7. <u>교육자치협력 민간</u> <u>부문 4명</u>	제3조(시상부문등) (조례안과 같음) 1. ~ 6. (조례안과 같음.) <u>7. 교육협력부문 4명</u>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1명”을 각각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2명”을 각각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1명”을 각각 “4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협력부문 4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부문등) 교육상의 시장부문 과 부문별 시장인원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시장부문등) ----- -----
1. 유아교육부문 <u>1명</u>	1. ----- <u>4명</u>
2. 특수교육부문 <u>1명</u>	2. ----- <u>4명</u>
3. 초등교육부문 <u>2명</u>	3. ----- <u>4명</u>
4. 중등교육부문 <u>2명</u>	4. ----- <u>4명</u>
5. 평생교육부문 <u>1명</u>	5. ----- <u>4명</u>
6. 교육행정부문 <u>1명</u>	6. ----- <u>4명</u>
<u><신 설></u>	<u>7. 교육협력부문 4명</u>